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2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인용법령의 명칭 및 띄어쓰기를 맞게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10조, 제14조, 제16조)
 - 「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
 -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 - 이내 → 이하
 - 1회에 한하여 → 한 차례만

- 기타의 → 그 밖의
- 호선 → 선출
- 관하여 필요한 → 필요한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법령 명칭과 띄어쓰기를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